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19 선고 2020나15781 판결 [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19 선고 2020나15781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. 31 선고 2018가단5119769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기찬

피고, 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기

변론 종결 2020. 10. 29.

판결 선고 2020. 11. 19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. 31. 선고 2018가단5119769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6,916,4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그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이종채

판사황정수

판사최호식